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7 선고 2017가단7446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원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·

피 고 1.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5. 16

판결 선고 2018. 6. 27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,308,734원 및 그 중 30,160,000원에 대하여 2017.7. 31. 부터 2017 . 9. 28. 까지는 연 9% 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,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들은 2016 . 9. 2. 원고보조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 한다)과 BMW 차량에 관 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, 월 임대료를 3, 594, 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장기대여계약(이하 '이 사건 대여계약' 이라 한다) 을 체결하였다.

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을 30, 160, 000원, 보험기간을 2016 . 9. 12. 부터 2020 . 9. 11. 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(이하 ' 이 사건 보험계약' 이라 한다) 을 체결하였다.

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, 이 사건 대여 계 약을 불이 행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 함으로써 원고가 피 보험 자에 게 보험 금을 지 급할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,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(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%이다)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 . 2017 . 1. 경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, 참가인은 2016 . 5. 26.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.

그 해지 당시연체된 임차료는 17, 390, 320원, 중도해지위약금은 38, 581, 200원, 주행거리위약금은 868,000원이었다.

다. 참가인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, 원고는 2016 . 6. 30. 참가인에게 보험가 입금액인 30, 160, 000원을 지급하였다.

이와 같은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날인 2017 . 7. 1.부터 같은 달 30.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48, 734원(= 30,160, 000원 x 6% x 30일/365일, 원 미만 버림)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내지 6호증, 갑 제7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이 사건 대여 계약상 공동 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,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보험금을

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과 2017 . 7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30,308,734원(= 30,160,000원 + 148,734원) 및 그 중 지급보험금 30,160,000원에 대하여 2017 . 7. 31. 부터 2017 . 9. 28. 까지 60일간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% 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참가인과 이사건 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제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,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피고 B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민석